

영국의 컴퓨터범죄 처벌법

산업·경제·문화·교육 등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은 전통적인 법체계의 대폭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정보화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입법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바 본지는 이번호부터 외국의 법제동향과 우리나라의 입법상 대응 또는 고려할 문제를 연재, 정보화사회로 가는 지름길을 모색해 본다.

I. 컴퓨터범죄 처벌의 문제점

오늘날 세계 주요국가에서는 다가오는 정보화의 물결에 보다 효율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법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컴퓨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다. 전통적인 형법이론으로는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것이 명백하다 하여도 범행의 동기나 故意를 포착할 수 없어 그 처벌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법이론상의 문제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범죄행위는 더욱 늘어가고 그 피해 역시 가속적으로 크게 번지고 있는 것이 컴퓨터관련 범죄라고 볼 수 있다.

II. 영국의 컴퓨터범죄 처벌법

영국에서는 컴퓨터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논란이 많은 종래의 형법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특별법으로 「1990년 컴퓨터 부정사용 처벌등에 관한 법률(Computer Misuse Act 1990)」을 1990년 6월29일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률은 컴퓨터에 저장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의 파괴, 무단접근등을 처벌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해 故意性의 입증을 크게 완화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동법 제1조와 2조는 「프로그램·데이터에 대한 무단침입」을 규정하고 있는데, 무단으로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프로그램이

나 데이터에 침입하여 컴퓨터 시스템의 조작을 방해하거나 기능수행을 다르게(본래의 사용목적과 다르게)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했다.

컴퓨터에 저장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에 무단·불법으로 접근하여 파괴하거나 악용 또는 부정유출행위, 기타 컴퓨터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컴퓨터범죄에서 가장 전형적인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처벌함에 있어서는 우선 그 범행의 동기로서 故意性의 포착이 있어야 하는데, 컴퓨터범죄는 고도의 지능적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원격조정(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해 먼거리에서 발생) 등으로 수사상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다 근본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입법을 시도하였다.

첫째로 故意性의 성립을 크게 완화하였다.

즉 컴퓨터범죄행위에 대하여 「행위상 故意의 목적은 어느 특정 프로그램·데이터 또는 어느 특정 종류의 프로그램·데이터에 대하여 변경·파괴하겠다는 목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故意의 성립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동법 제1조 제2항).

컴퓨터범죄의 범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 프로그램·

데이터를 파괴, 부정사용 등을 하겠다는 명백한 목적을 밝힐 수 없다 하여도(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이를 포착하기는 매우 어렵다) 결과적으로 컴퓨터의 부정조작 내지는 기능을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그故意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였다.

둘째로 컴퓨터범죄를 방조하는故意를 가지고 한 행위자도 처벌한다.

적극적으로 컴퓨터범죄를 저지른 주범 뿐만 아니라故意를 가지고 방조한 자에 대하여도 「추후의 죄」(Further Offences)로서 처벌하도록 명문화하였다(동법 제2조 제1항).

예컨대, 컴퓨터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나 프로그램의 암호코드를 알려주거나, 시스템의 특성을 범죄 행위자에게 쉽게 범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故意로 알려주었을 때, 자기가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추후의 죄」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밀코드의 누설 까지도 컴퓨터범죄로 분류하여 처벌하는 것은 좀 특이한 입법이며, 형법이론상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컴퓨터범죄는 다른 일반범죄와 달리 암호코드의 입수 및 식별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누설

하는 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고서는 그 범죄행위를 미리 예방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로 컴퓨터범죄행위의 수사·처벌에 대한 관할구역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보통 일반범죄에 대하여는 관할 구역을 정하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범죄는 관할 수사기관에서 수사·처벌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컴퓨터범죄는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 되어있어 통신망에 의하여 먼거리에서 범죄행위가 가능하다.

예컨대, 서울○○회사의 컴퓨터시스템 파괴는 부산이나 제주도 등 원격지에서 범행할 수 있고, 위성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본·미국 등에서도 범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범죄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관할구역을 특정할 수 없다.

이 법률에서 「컴퓨터범죄(제1조내지 제3조)에 대하여 범죄행위 또는 행위결과의 증거가 유죄의 판결에 요구되는 경우 그 행위가 국내에서 발생하였는가의 여부 또는 그 피고인(범행자)이 국내 특정지역에 있었는가의 여부 등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동법 제4조 내지 제6조).

즉 관할 구역이 범죄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범죄행위와 범행자의 행위장소는 국내·국외 또는 특정지역에 따라서 문제되지 아니한다.

III. 앞으로의 과제

앞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정보화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

오늘날 컴퓨터가 국방·경제·산업·문화·사회 등 사회 각 부문에 폭넓게 파급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신뢰성이 상실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며, 국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나라도 컴퓨터범죄 방지에 관한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영국·서독·일본 등 세계 주요국가의 최근 입법동향에 대하여 보다 깊은 비교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